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회칙

(2020.06.05 개정)

제1장 총강

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회)

2조 (목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회칙(이하 회칙)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교시인 '의와 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회원의 민주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여 대학 문화를 고양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회원)

- 1) 본 회의 회원은 본교 경영경제대학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 2) 가 전공 및 전공개방 대상자는 주 전공 확정 이전까지 경영경제대학 가 배정 학부(과)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4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2장 4조와 5조를 따른다.
- 2) 회원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3) 본회 회원은 각 선거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 5) 회원은 회비 납입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

5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대학 자치와 본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해 나갈 의무가 있다.

6조 (자문 위원회)

- 1) 본회는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하여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2) 본회 자문 위원회는 계열 부총장 및 각 학부(과) 교수 평의회에서 선출된 평교수 1인으로 구성한다.
- 3) 자문 위원회는 학생 권익에 해당하는 학교 행정에 대해 학생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조 (구성)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경영경제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경영학대회), 경영

경제대학운영위원회(이하경경운위), 집행부, 학부(과) 학생회, 전공및 반학생회로구성한다.

8조 (특별기구)

- 1)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2) 특별기구는 경경운위의 의결을 거쳐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2장 학생총회

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10조 (구성)

학생총회의 구성은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11조 (권한)

- 1)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2) 학생총회는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경영경제대학 부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

12조 (의장)

- 1)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2) 본 회의의 진행은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 3) 학생회장 궐위 시 의장은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 4)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공석일 시 본 회칙의 제13장에 준하여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진행은 부비대위원장이 맡는다.

13조 (소집)

- 1) 학생총회는 경경운위 및 경경학대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3일 이내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학생회장이 이를 즉시 소집한다.
- 3) 학생총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조 (의결)

- 1)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총투표

15조 (정의)

총투표라 함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의사를 투표로 묻는 방식이다.

16조 (권한 및 목적)

- 1)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며 실현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회칙에 명시된 모든 의결 방식보다 우선시 된다.

17조 (투표관리위원회 정의, 구성, 업무 및 권한)

- 1)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다.
- 2) 총투표를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며 총투표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체된다.
- 3) 조직의 구성은 본 회칙의 제6장에 따른 경경운위로 한다.
- 4) 총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총투표의 안건에 대해 공지하고 총투표의 홍보물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알려야한다.
- 5) 투표관리위원장과 투표관리부위원장은 본 회칙의 62조 2항에 따라 각각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18조 (진행방식 및 투표일정)

- 1) 진행방식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그러나 새로운 투표 진행방식이 고안될 시, 17조의 투표관리위원회에서 그 방식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2) 투표의 안건은 투표개시일 최소 7일 전에 투표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해야 한다.
- 3) 투표는 기본적으로 3일 동안 진행한다.
- 4)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과반을 넘지 못할 시에는 투표관리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2일의 투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5) 투표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로 정하며, 지식경영학부생에 한하여 수업시간을 고려하고자 투표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한다. (단, 투표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의결에 따라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9조 (예산)

- 1) 총투표와 관련된 예산은 학생회비로 집행한다.
- 2) 해당 내역은 모든 학우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20조 (결과 공지)

총투표 종료 후에는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총투표가 성사되었을 시 결과에 따른 후속결과도 30일 이내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탄핵

21조 (탄핵권)

- 1) 본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국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권을 가진다.
- 2) 탄핵권 집행에 대한 최고 우선권은 학생총회가 갖는다.
- 3)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할 시 경경학대회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권을 갖는다. 단, 경경학대회가 개최되지 못할 시 경경운위가 그 권한을 위임받는다.

22조 (진행방식)

- 1) 의장은 경경운위 내에서 임시로 선출한다.
- 2)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 3)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집행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23조 (탄핵심판)

- 1) 탄핵심판의 대상자는 심판 기간 동안 경경운위에서 제외된다.
- 2)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즉시 심판에 착수하며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 3) 집행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즉시 심판에 착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된다.
- 4) 탄핵심판에서 피소추인은 항변할 권리와 토론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5) 피소추인이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과 토론 요청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6) 모든 항변과 토론이 끝난 후에 의장의 진행 하에 표결을 진행한다.

24조 (효력)

- 1) 탄핵심판의 의결로 인해 학생회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2) 탄핵심판에 의해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탄핵이 확정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궐위로 판단한다.
- 3)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는 본 회칙의 제13장에 준한다.
- 4) 탄핵소추안 또는 탄핵심판이 부결될 경우 해당 탄핵 대상자는 다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5조 (공지)

의장은 탄핵심판 결과와 투표결과를 모두 공지해야 한다.

제5장 경영경제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26조 (지위)

경영경제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27조 (구성)

- 1) 경경학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경영경제대학 부학생회장
 - 나. 학부(과) 학생회장, 학부(과) 부학생회장
 - 다. 전공 및 반학생회장, 전공 및 반부학생회장 또는 학부(과)대표
(단, 학년의 정원이 100명이 넘어 두 명의 학부(과)대표가 존재하는 경우 2인을 인정한다.)
- 2) 전공 및 반학생회장 또는 학부(과)대표의 궐위 시에는 재적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단, 소속 단위의 회칙에 의거하여 인준을 거친 권한대행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 3)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속 학부(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소속 단위의 회칙에 의거하여 인준을 거치고 경경학대회 개최 1시간 전까지 상급단위의 확인을 필한 위임자에 한한다.

28조 (의장)

- 1)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경경학대회를 대표한다.
- 2) 본 회의의 진행은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 3) 학생회장 궐위 시 의장은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 4) 학생회장 궐위 시 본 회의의 진행은 집행국장이 맡는다.
- 5)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공석일 시 본 회칙의 제13조에 준하여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진행은 부비대위원장이 맡는다.

29조 (소집)

경경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중 의장이 소집한다.
- 2) 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경경운위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4) 정기회의의 경우 의장이 대회 5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임시회의의 경우엔 의장이 즉시 공고한다.

30조 (업무)

- 1)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
- 2) 본회 예, 결산의 심의 및 의결
-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 4)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 5) 집행부서의 신설, 폐지 및 집행간부의 소환 및 탄핵 결정
- 6) 학칙 개정의 건의 및 의결
- 7) 회칙 및 세칙의 재정 및 개정
- 8) 기타 경경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31조 (권한)

- 1)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경경운위와 집행부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2) 경경학대회 소집 요구
- 3) 본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

32조 (안건 상정)

- 1) 의장 또는 경경운위는 개회 3일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2)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3) 회원 7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3조 (의결)

- 1)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의결권을 가진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 및 의결한다.
- 2) 토론 및 의결에 관해서는 대회 시행 세칙을 둔다.

34조 (회의록 작성)

- 1) 경경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2) 회의록에는 대회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회의록 작성은 본회의 집행부 내 2인이 작성한다.
- 3) 본회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6장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경영경제대학 부학생회장

35조 (임무 및 권한)

- 1) 학생회장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의 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경영경제대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집행부의 장이 된다.
- 2) 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경제대학장 및 교학부총장, 총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3) 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 집행국 국장과 각 부서의 국장의 임명 및 파면, 경경학대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 4) 학생회장은 기타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5) 부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경경운위 부위원장이 된다.
- 6)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7)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8) 학생회장은 임의로 회장 고유의 권한과 업무를 타인이 대행토록 할 수 없다.

36조 (권한대행)

권한대행이란 학생회장의 권한을 적법한 운영기구 또는 특정인이 대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37조 (임기)

- 1)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

다. 단 다음 해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 시 이전 경경운위 의장은 다음 해 구성된 경경운위를 소집할 수 있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단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8조 (선출)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경경운위에서 호선한다.

3) 전항의 경우는 경경학대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9조 (선서)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취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반드시 행한다.

“본인은 ()년도 경영경제대학 (부)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 본 선서는 당선인사로 대체될 수 있다.

40조 (신분 보장)

총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41조 (사퇴)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퇴할 경우 사퇴문과 사퇴서를 경경운위에 제출해야 하며 경경운위는 사표 수리 24시간 이내에 회장의 사퇴문과 함께 사퇴를 공고해야 한다.

제7장 경영경제대학 운영위원회

42조 (위치)

경영경제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경경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43조 (구성)

1) 경경운위는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경영경제대학 부학생회장,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2) 경경운위 위원장은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은 경영경제대학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3) 한 학부(과)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참석하지 못할 시, 해당 단위의 한 회원에게 발언권을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4조 (업무 및 권한)

경경운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본회 제반 사업 계획안의 심의 조정
- 2) 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
- 3) 본회 결산안 심의
- 4) 집행부 업무 집행의 조정
- 5)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의 재정 및 개정 발의
- 6) 학생총회의 소집요구
- 7) 경경학대회 소집 요구와 본회의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
- 8) 경경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

45조 (소집)

경경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 1)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경경운위에서 정한다.
- 2) 임시회의는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경경운위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6조 (의결)

- 1) 경경운위는 재적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중 1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 2)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집행부

47조 (위치)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48조 (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경경운위에서 인준하며 집행국장과 각 부서의 국장 및 국원으로 구성한다.

49조 (임기)

집행부의 임기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를 따른다.

50조 (업무 및 권한)

- 1) 사업 및 예산의 집행
- 2)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 3) 기타 집행부의 업무

51조 (부서 및 기능)

집행부는 제반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제9장 학부(과) 학생회

52조 (구성)

- 1) 학부(과) 학생회는 해당 학부(과) 전체학생으로 구성한다.
- 2) 학부(과) 학생회는 해당 학부(과) 학생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과 조직을 갖는다.

53조 (학부(과) 학생회장단)

- 1) 학부(과) 학생회장단은 해당 학부(과)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2) 학부(과) 학생회장단은 해당 학부(과) 학생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54조 (업무 및 권한)

학부(과) 학생회의 업무 및 권한은 해당 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10장 재정

-제1절 경영경제대학 재정-

55조 (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까지로 한다.

56조 (회비)

- 1) 본회의 회비에 대한 예산안은 집행부의 회계담당부서에서 확정하여 경경운위의 조정을 거쳐 경경학대회에서 확정된다.
- 2) 본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
- 3)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하며, 집행부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57조 (예산 편성, 심의 확정)

학생회장과 집행부의 회계담당부서에서 예산안을 각 기구별, 시기별, 사업 계획별로 편성하고 경경운위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기 경경학대회 때 의결한다.

58조 (기타수익)

- 1) 기타수익이란 학생회의 각종 수익사업, 기부금 등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한 수익금을 일컫는다.
- 2) 기타수익은 수익이 발생한 월별로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 3) 기타수익의 수익발생 시점부터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세부적인 수익과 지출은 결산 공고 시 공고해야 한다.

59조 (결산)

- 1) 본회의 결산은 집행부의 회계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며 경경운위의 심의와 경경학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매월 초 집행부의 회계담당 부서는 전월 결산 보고서를 공고한다.
- 3)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집행부의 회계담당 부서는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제2절 학부(과) 재정-

60조(회비통일 범위)

- 1) 학생회비 납부 안내문
- 2) 학생회비 납부 통지서
- 3)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개인용, 학부(과, 전공 및 반)용) 및 영수증 지급 및 보관방식
- 4) 학생회비 환불 및 재납부 방식
- 5)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

61조(회비 납부 안내문)

- 1) 학생회비 납부 안내문의 구성에는 학생회비 환불 비율 산정방식, 예산안 및 결산안의 확인 방법, 영수증 보관 권고, 학생회비 환불 가능대상, 학생회비 납부 시 수혜 가능한 혜택, 학생회비 금액이다.
- 2) 학생회비 환불 비율 산정방식은 납부 금액에서 고정비용비율(학생회 사업 및 운영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비율)만큼의 금액을 뺀 환불가능금액의 $1/8 * \text{남은학기차수}$ 이다.
- 3) 고정비용비율 산출은 매년 신입생 입학식 전 2월 중으로 학부(과)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회계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단,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2월 셋째주 안으로 산출한다.)
- 4) 학생회비 환불 가능 대상은 자퇴, 전과, 퇴학 및 기타 학부(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62조(회비 납부 통지서)

- 1) 납부 통지서는 학부보관용 및 학생보관용으로 구성한다.
- 2) 학부(과)별 오리엔테이션 및 개강총회에서 학생회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안내문과 함께 학생회비 납부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납부통지서를 작성하게 한다. (단,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 못하여 대면 작성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파일로 대체한다.)
- 3) 납부 통지서는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1차적인 의사의 표시로 간주한다.
- 4) 학부보관용 납부 통지서는 학생회비 명단 작성 및 납부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 5) 학생보관용 납부 통지서는 학생회비 제출 계좌 및 금액 확인 용도이다.

63조(회비 납부 영수증)

- 1)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은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발행한다.
- 2) 학부보관용 영수증은 학생회비 납부를 최종 확인해 명단을 확정지으며, 추후 환불요구가 발생할 시 해당 학생의 학생회비 납부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 3) 단, 경영학부는 영수증의 발행을 소속 전공 및 반 학생회가 담당한다.
- 4) 학생보관용 영수증은 해당 학부(과)의 학생회비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추후 환불절차를 진행할 시 필요로 한다.
- 5) 학부보관용과 학생보관용 납부 영수증 사이에는 해당 학부(과) 학생회의 직인을 찍는다.
- 6) 단, 경영학부는 소속 전공 및 반 학생회의 직인을 찍는다.
- 7) 단, 절취 전의 전체 이미지는 학생보관용 납부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64조(회비 환불 및 재납부 방식)

- 1) 학생회비는 각 단위 간 이전이 아닌, 환불 및 재납부의 방식을 취한다.
- 2) 각 단위 간 이전은 기존 당사자가 속해있던 학부(과)에서 학생회비 환불 가능 사유로 학부(과)를 이동한 당사자가 새로 속한 학부(과)에게 직접 학생회비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환불은 해당 학부(과) 학생회가 직접 당사자에게 환불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재납부는 당사자의 자유로 새로 속한 학부(과)에게 학생회비의 $1/8 \times$ 남은학기치수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단, 경영학부는 소속 전공 및 반 학생회가 환불 및 재납부를 담당한다.

65조(회비 납부자 명단)

- 1)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은 영수증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학생회비 납부 증명 수단이다.

66조(회비 통일 양식)

- 1) 회비 통일 양식은 집행부의 회계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67조(회비 통일 범위의 적용)

단, 회비 통일과 관련한 내용은 19학번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1장 선거

68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대한 피선거자격)

- 1) 본회 회원으로 4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2)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4개 학부(과) 이상에서 15인 이상 씩)

69조 (선거 시기)

-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 2)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거직 임원은 각각 그 회칙에 의한다.

70조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경영경제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 2) 선관위는 경경운위 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이 선관위원장, 부학생회장이 부선관위원장이 된다.
- 3) 선거에 의한 이의제기는 선거일 후 1주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 4) 선관위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선거일을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71조 (임기)

모든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회칙 개정 및 제정

72조 (발의)

회칙 개정 및 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1) 경경학대회의 재적 대표자 1/5이상의 발의
- 2) 경경운위의 발의
- 3) 회원총수의 1/500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

73조 (의결)

회칙 개정 및 제정의 발의 시 경경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경경학대회를 열고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4조 (공포)

- 1) 경경학대회 의장은 개정안 및 제정안이 확정되면 의결 3일 이내에 공포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 회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르며, 예외적인 경우 소급입법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75조 (정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경영경제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마련된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 되어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경경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76조 (구성)

구성원은 본 회칙 43조에 준하여 구성되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77조 (업무 및 권한)

비대위는 본 회칙 44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경경운위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78조 (소집과 의결)

본 회칙 45조와 46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79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의, 업무 및 권한)

- 1)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란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의 대표이다. (추가) 필요시 비상대책부위원장(이하 부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 2)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은 각각 본 회칙 35조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비대위의 의결을 통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80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출)

- 1)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구성된 후 비대위원들 중 한명으로 구성된다.
- 2) 비대위원들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출하나 추천을 거부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다수의 후보가 나온 경우 제일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3) 선출 시 비대위 전체 인원 중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다수의 후보자들이 나올 경우 최다득표자의 표수는 비대위 인원수의 절반을 넘어야한다. 넘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 4) 부비대위원장의 선출방식도 위와 같이 시행한다.

부칙

1조 (발표)

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경경운위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다.